이 자료는 2017년 8월 2일(수) 15:00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보도자료1

2017년 세법개정안

-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고 소득분배를 개선하겠습니다 -

2017. 8. 2.

기획재정부

목차

│. 세법개정 기본방향1
1.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 ······ 1 2. 세법개정 기본방향 ······ 2
Ⅱ. 주요 개정내용3
1. 일자리 지원 (1)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2.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 (1)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
3.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6 (1) 세입기반 확충
Ⅲ.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

I. 세법개정 기본방향

1 조세정책 여건 및 과제

- □ (경제·고용) 최근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의 해외이전, 고용없는 성장 심화 등으로 '일자리-분배-성장' 선순환 약화*
 - * 실업률(%): ('00) 4.4 → ('05) 3.7 → ('10) 3.7 → ('15) 3.6 → ('17.1 ~ 5월) 4.2
 - **청년·여성 등의 취업애로***가 여전하며, 신규 일자리도 열악한 비정규직에 집중되어 낮은 임금**·고용불안에 직면
 - * 청년 실업률(%): ('00) 8.1 \rightarrow ('05) 8.0 \rightarrow ('10) 8.0 \rightarrow ('15) 9.2 \rightarrow ('17.1 \sim 5월) 10.5
 - ** 시간당 임금(대기업 정규직=100): (대기업 비정규) 63 (중기 정규) 53 (중기 비정규) 37
- □ (양극화) 그간 가계-기업*, 가계간 소득 격차**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***로 사후적 격차 축소 기능도 미흡
 - * 가계소득 비중(%): ('95) 69.0 → ('00) 67.9 → ('05) 64.8 → ('10) 60.4 → ('16) 62.1
 - ** 임금 10분위 배율: ('06년) 11.0배 → ('15년)14.8배
 - *** 지니계수 개선율(%, '14년.): (한국) 13.5('15) (미국) 22.4 (영국) 31.3 (독일) 42.2
 - 그 결과, **양극화가 심화**되는 가운데 소비위축으로 성장에도 부담
- □ (재정여건) 저출산, 복지제도 성숙 등에 따라 공공사회지출이 증가*하고 일자리 창출, 사회안전망 확충 등 재정수요** 확대
 - * GDP대비 공공사회지출('16년, %): (한국) 10.4 (OECD 평균) 21.0%
 - ** 기초연금 확대. 아동수당 도입.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
 - 새정부는 저성장·양극화 극복을 위한 **재정의 선도적 투자** 확대 추진(지출증가 > 경상성장률)
- ⇒ 일자리 창출과 소득재분배에 역점을 두고 세제운용 필요
- ⇒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세입기반을 확대하여 재정수요 대비 필요

2 세법개정 기본방향

- ◇ 일자리 창출, 소득재분배, 세입기반 확충에 역점을 두고 추진
 -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현행 조세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
 - **소득재분배 개선**을 위해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, 서민·중산층 세부담은 축소
 - 재정의 적극적 역할 수행을 위한 세**입기반 확충 추진**
 - ⇒ 일자리 확대·양극화 해소를 통해「지속적인 국민성장」

국민성장을 위한 공평하고 원칙을 갖춘 세제 비전 기본 일자리 소득재분배 방향 ① 고소득층 과세 강화 ① 일자리 창출 추진 ② 서민 · 중산층 지원 ② 일자리 질 향상 전략 ③ 자영업ㆍ농어촌 지원 ③ 일자리 기반 확충 세입기반 확충 + 조세제도 합리화

Ⅱ. 주요 개정내용

1 일자리 지원

- ◇ 고용없는 성장이 심화되고 청년·여성 등의 취업애로가 여전한 가운데, 대기업-중소기업, 정규직-비정규직 등 고용시장 양극화도 심화
 - ⇒ **양질의 일자리를 많이** 늘릴수록 세제혜택이 더 돌아가도록 전면 재편하여 '일자리-분배-성장'의 선순환 구조 복원
 - 세제지원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 → 일자리 수(數) 증가
 - 임금 증가, 정규직 전환, 상생협력 등 지원 → 일자리 질(質) 향상
 - 창업·벤처 활성화 등 지원 → 일자리 기반(基盤) 확충

(1)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□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한 고용증대세제 신설

-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·청년고용증대세제 통합·재설계
 → 고용증대세제 신설
 - 투자와 연계하여 **고용 간접지원** → 투자와 관계없이 **고용 직접지원**
 - 중소·중견기업에 대해 지원기간 및 공제금액 대폭 확대
 - 다른 고용·투자지원 제도와의 중복 적용 배제 → 중복 적용 허용

<현 행>

○ 투자 & 고용을 동시에 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3~8% 공제 (1년간)

* 다른 고용 투자지원 제도와 <u>**중복 배제**</u>

• 공제한도: 상시근로자 증가 1인당 1,000~2,000만원 (실제실적: 1인당 평균 420만원) □

청년 고용 증대 세제 (1년간) 구성인 (1년간)

고용 창출

투자 세액

공제

<고용증대세제 신설>

○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 증가인원 1인당 일정금액 공제 (중소·중견기업은 2년간)

* 다른 고용·투자지원 제도와 **중복 허용**

	구분	중소	중견	대기업
	(단위:만원)	(2년간)	(2년간)	(1년간)
>	상시근로자	700 (1,400)	500 (1,000)	1
>	청년 정규직, 장애인 등	1,000 (2,000)	700 (1,400)	300 (300)

□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확대

- 고용을 증가시킨 중소기업의 고용인원이 유지되는 경우 사회 보험료 세액공제*의 적용기간을 1년 → 2년으로 확대
 - * 고용증가인원 × 사회보험료 상당액 × 50~75%(청년, 경력단절여성 100%)

□ 근로취약계층 재고용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세액공제*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
 확대하고, 공제율 인상(10% → 30%, 중견 15%) ※ 일몰 3년 연장
 - * 경력단절여성을 해당 중소기업이 재고용시 2년간 인건비의 10% 세액공제
- 특성화고 등 졸업자 복직시 세액공제* 적용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하고, 공제율 인상(10% → 30%, 중견 15%) ※ 일몰 3년 연장
 - * 특성화고 등 졸업자가 병역이행 후 중소기업에 복직시 2년간 인건비의 10% 세액공제

□ 지역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수도권 본사의 지방이전에 대한 감면 적용시 지방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세제혜택이 커지도록 감면소득 계산방법 개선*
 - * (현행) 과세표준 × Min(이전급여비율, 이전인원비율) (개정) 과세표준 × 이전인원비율

□ 외국인투자기업의 일자리 창출에 대한 세제지원* 확대

- *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5년간 100%, 2년간 50% 소득세·법인세 감면 감면한도: 투자금액의 50% + 고용 1인당 1,000~2,000만원(투자금액의 최대 40%)
- 외국인투자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**감면한도 적용시** 고용기준 한도액 확대
 - * (현행) 투자금액의 50% + **고용기준 40%** → (개정) 투자금액의 50% + **고용기준 50%**

□ 기업 M&A 등 조직 변경시 세제지원 요건에 고용승계요건 추가

- 기업 M&A 등 조직변경시 세제혜택(과세이연)을 받을 수 있는
 요건*에 고용승계 요건(종업원의 80% 이상을 3년간 유지) 추가**
 - * 사업계속성, 지분연속성 등
 - ** 재무구조개선계획 등의 이행을 위한 구조조정의 경우에는 예외 인정

(2) 일자리 질(質)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 확대

□ 임금 즁가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근로소득증대세제^{*}를 **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중·저소득 근로자의** 임금 **증가를 유도**하도록 개선 ※ 일몰 3년 연장
 - *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임금증가분에 대해 10%(대기업 5%) 세액공제
 - 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10% → 20%로 상향 조정
 -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를 중·저소득 근로자로 조정(총급여 1.2억원 미만 → 7천만원 미만)

□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* 확대

- *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1인당 700만원(중소), 500만원(중견) 세액공제
- 비정규직 근로자를 **정규직으로 전환한 중소기업의 세액 공제액을 700만원에서 1,000만원**으로 확대 ※ 일몰 1년 연장

□ 중소기업 취업근로자*에 대한 세제지원 기간 연장

- * 중소기업 취업 청년(15~29세), 장애인, 60세 이상인 자, 경력단절여성
-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(70%) 제도의 **적용기간을** 취업 후 3년간에서 5년간으로 확대

□ 근로시간 단축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* 확대

- * 근로시간 단축(고용유지)에 따른 기업의 임금감소분 및 보전분에 대해 50% 소득공제
-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임금보전을 위해 시간당 임금을 인상시키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 상향 조정(50%→75%)

□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(기업소득환류세제* 일몰 종료)

- * 투자·임금증가·배당 금액이 소득의 일정액에 미달시 추가 과세(세율 10%)
 - ④ 투자포함형 : (소득의 80% 투자(1)・임금증가(1.5)・배당(0.5)) x 10%
 - ® 투자제외형 : (소득의 30% 임금증가(1.5)·배당(0.5)) x 10%
- 중·저소득 근로자 지원 및 투자·고용·상생협력 촉진을 위해 투자·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(3년간 적용)
 - \triangle [기업소득* \times α (60~80%) { 투자(1) + 임금증가(2~3) + 상생지원(3) }] \times **20%**
 - ®[기업소득* × β(10~20%) {임금증가(2~3) + 상생지원(3)}] × 20%
 - * 법인세율 인상과 중복과세되지 않도록 기업소득에서 2천억원 초과분 제외
 - 기업소득 사용기준율(α,β)은 실태분석을 거쳐 시행령 개정시 확정
 - * 현행 대비 세부담 변동이 최소화되도록 사용기준율·가중치 조정
 - 투자 및 상생협력촉진 취지에 맞추어 배당과 **토지 투자를** 기업소득 사용 대상에서 제외
 - 중·저소득 근로자의 고용·임금증가 유도를 위해 기중치 및 적용대상 조정
 - 고용증가에 따른 임금증가분 가중치를 대폭 상향(1.5~2 → 2~3)
 - * (현행) 1.5 (청년 2) → (개정) 고용증가2 (청년 정규직·정규직전환 3)
 - 임금증가분 계산시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범위 조정(총급여
 1.2억원 미만 → 7천만원* 미만)
 - * 전체근로자의 상위 10%, 300인 이상 기업의 상위 20% 수준
 - 대기업이 2차・3차 협력기업과 성과공유, 협력중소기업의 R&D 및 근로자 임금・복지 등에 지원하도록 상생지원액* 가중치 상향(1→3)
 - * 지원방식: 상생협력기금, 협력중소기업 근로복지기금을 통해 지원

(3) 창업 · 벤처기업 육성 등 일자리 기반 확충 지원

□ 고용창출형 창업·벤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창업기업의 고용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**창업 중소기업 세액 감면시 고용증가율**에 따라 **최대 50% 추가감면***
 - * (현행) 5년간 50% 감면 → (개정) 기본 50% + 최대 50%(고용증가율 x 1/2) - 업종별 최소고용인원(제조업·광업 등 : 10인, 기타 업종 : 5인) 규정
 - 인공지능, 사물인터넷, 클라우드 등 **신성장 서비스업종**은 **감면율을 초기 3년간 확대***
 - * (현행) 5년간 50% 감면 → (개정) 3년간 75%, 2년간 50% 감면
- 사내벤처를 활성화하기 위해 **사내벤처 등을 통해 분사***한 중소기업은 **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**
 - * (현행) 종전 사업 승계시 창업 불인정 → (개정) 사내벤처 분사시 창업 인정
 - ※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상 **사내벤처 분사시 창업으로 인정**되는 요건
 - ① 기존 사업자와 사업개시자 간에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
 - ② 사업개시자가 새로 설립되는 기업의 대표자 & 최대주주
- 기술 우수기업 지원을 위해 엔젤투자 소득공제(30~100%) 대상 확대*
 - * (현행) 벤처기업, 창업 3년 이내 기보·중진공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등 (개정) 창업 3년 이내 신용평가사의 기술신용평가(TCB) 우수기업,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한 창업 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 등 추가
-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·합병시 세액공제* 요건 완화 (인수·합병 대가로 현금 50% 지급요건 삭제)
 - *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인수·합병시 기술가치금액의 10% 세액공제

□ 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융친화적으로 개편

-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고용·R&D를 많이 하는 기업 에게 지원이 확대되도록 중소기업 지원세제 개편
 - 고용증대세제,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* 간 중복 허용
 - * 투자·고용과 관계없이 기업규모·업종·지역별로 세액의 5~30% 감면
 - 중소기업의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지출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 인상(현행 30% → 최대 40%)
 - 다만, 특별세액감면은 모든 중소기업에 **일률적**으로 적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**감면한도**(1억원)를 설정^{*}
 - * 고용인원 감소시 감면한도(1억원)에서 1인당 500만원씩 축소

□ 재기 자영업자 · 벤처 창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영세 자영업자*가 폐업한 후 '18.12.31.까지 재창업 또는 취업 하는 경우 기존 체납세금**을 면제(1인당 3,000만원 한도)
 - * 폐업전 3년 평균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기준(업종별 5~15억원) 이하
 - ** '17.6.30. 기준 무재산 등의 사유로 징수가능성 없는 국세체납액
- 신성장 벤처기업^{*}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^{**}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(법인세, 2억원 한도)
 - * 인공지능 등 신성장동력·원천기술 R&D 투자한 제조업 및 신성장 서비스업
 - ** 법인이 국세를 납부하지 못하는 경우 과점주주 등이 법인 대신 납세의무 부담
 - 대상 : 소기업 기준 (업종별 매출액 10억원 ~ 120억원) 에 해당하는 신성장 벤처기업

2 소득재분배 및 과세형평 제고

- ◇ 계층간 소득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도 미흡하여 양극화 심화
 - ⇒ 소득재분배 개선을 통해 양극화 해소 및 사회통합 유도
 - 상대적으로 담세능력이 있는 고소득층의 세부담 적정화
 - 서민·중산층, 영세자영업자 등의 세부담은 축소
 - →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지원

(1)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 강화

□ 소득세 최고세욜 조정

- 과표 5억원 초과 40% → 3억원 초과 40%, 5억원 초과 42%
 - * (대상인원) 9.3만명: 근로 20만명(상위 0.1%), 종합 4.4만명(상위 0.8%), 양도 29만명(상위 2.7%)

과표구간	현행 세율	개정안
1,200만원 이하	6%	
1,200만원~4,600만원	15%	(지 도)
4,600만원~8,800만원	24%	(좌 동)
8,800만원~1.5억원	35%	
1.5억원~3억원	200/	(좌 동)
3억원~5억원	38%	40%
5억원 초과	40%	42%

* OECD국가 중 단일세율 국가(동구권 5개국), 연방국가 등 국세 비중이 낮은 국가(스위스 등 5개국)를 제외한 25개국 평균 41.9%(지방세 포함 47.1%)

□ 대주주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 확대

- 대주주*의 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율 조정
 - (현행) 20% → (개정) 과표 3억원 이하 20%, 3억원 초과 25%
 - * (코스피) 지분율 1%, 종목별 보유액 25억원('18.4월 15억원, '20.4월 10억원) (코스닥) 지분율 2%, 종목별 보유액 20억원('18.4월 15억원, '20.4월 10억원)

-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**대주주의 범위 단계적 확대**
 - (현행) '18.4월 종목별 15억원, '20.4월 10억원 초과
 - (개정) '18.4월 종목별 15억원, '20.4월 10억원, '21.4월 3억원 초과

□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중여세 과세* 강화

- * 특수관계법인과의 매출이 정상거래비율(대기업 30%, 중견 40%, 중소 50%)을 초과하는 경우 수혜법인의 지배주주가 얻은 이익을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
-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**편법증여 방지를** 위해 **지배주주 등의 중여세 과세대상 이익 계산방법 변경***
 - * (대기업) 세후이익 × 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15%) × (주식보유비율 3%)

 → 세후이익 × 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5%) × 주식보유비율

 (중견기업) 세후이익 × 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40%) × (주식보유비율 10%)

 → 세후이익 × (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20%) × (주식보유비율 5%)
 - 교차·3각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집단 간에 몰아준 일감도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에 포함하여 계산
- 대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 확대
 - (현행)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이 30% 초과시 적용
 - (개정) 특수관계법인과의 **거래비율이 20**%를 초과하면서 **거래액 1,000억원** 초과시에도 과세대상에 추가
- 공정거래법 개정^{*} 등을 반영하여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**중견・중소** 기업^{**}에서 제외되는 기업의 범위를 **상출기업집단**(자산 10조원 이상) 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(자산 5조원 이상) 소속기업으로 확대
 - * '17.7.19.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(상출기업집단→공시대상기업집단)
 - ** 정상거래비율(대기업 30%, 중견 40%, 중소 50%) 등 우대

□ 상속·중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

- 세목간 형평, 과세인프라 확충 등을 감안하여 상속·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현행 7% → 3%로 단계적 축소*
 - * (현행) 7% → ('18) 5% → ('19 이후) 3%

□ 가업상속 지원제도* 개선

- *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(중소·중견기업)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(추후 양도시 피상속인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과세)
- **장수기업 지원이** 될 수 있도록 **가업영위기간별 공제한도를 조정***
 - * (현행) 가업영위기간 10/15/20년 이상시 200/300/500억원 공제 (개정) 가업영위기간 10/20/30년 이상시 200/300/500억원 공제
- 중견기업에 대해서는 상속세 납부능력 요건* 신설('19년 시행)
 - * 가업상속인의 가업상속재산 외의 다른 상속재산이 가업상속인 부담 상속세액의 1.5배보다 큰 경우 가업상속공제 적용 배제
- 가업상속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연부연납이 가능하도록 하고,
 연부연납 허용 기간을 최대 20년으로 연장*
 - * (현행) 2년 거치, 5년 분납(가업상속재산 비중이 50% 이상시 3년 거치, 12년 분납) (개정) 10년(20년)으로 연장하고. 거치 여부는 선택 허용

(2) 서민·중산층 세제지원 확대

□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확대

- 일하는 저소득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10%
 수준 상향 조정(77~230만원 → 85~250만원)*
 - * 최대 지급액(만원): 단독 77 → 85, 홑벌이 185 → 200, 맞벌이 230 → 250
- 외국인 한부모 가구, 장애인에 대한 지급 확대
 -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**외국인 한부모가구**에 대해서도 **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**
 - 장애인은 단독가구인 경우에도 연령제한(30세 이상)을 받지 않고 근로장려금 지급

□ 주거안정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

-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월세 세액공제율*을 10% → 12%로 인상
 * 급여 7.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해 월세지급액(한도 750만원)의 10% 세액공제
-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을 '20.12.31.까지 연장

□ 의료비 세액공제(15%) 확대

- 중증질환 등 건강보험산정특례자*가 지급한 의료비를 한도 (700만원) 없이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 의료비에 추가
 - * 중증질환(암, 중증화상 등), 희귀난치성질환(14개 질환), 결핵으로 진단을 받아 본인부담 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한 자
- 성실사업자의 난임시술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인상(15% → 20%)

□ 효도 장려를 위한 세제지원 확대

- 수무 동거봉양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주택 양도시 양도
 소득세 비과세 적용요건 완화(5년 이내 양도 → 10년 이내 양도)
-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없이 **70세 이상 부모를 부양**하는 경우 단독가구가 아닌 **홑벌이 가구***로 분류하여 근로장려금 지급 확대
 - * 소득기준 : 1,300만원 \rightarrow 2,100만원, 최대지급액 : 85만원 \rightarrow 200만원
- 노부모를 위해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부담하는 재가 간병비 등 (노인장기요양급여)을 공제대상 의료비^{*}에 추가
 - * 현재는 월 한도액 이내 요양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(재기급여 15% 시설급여 20%)만 포함

□ 출산·보육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**가정어린이집**(5년 이상 운영)과 거주주택(2년 이상 거주)을 각각 1채 보유하는 경우 **거주주택 양도시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**
 - 기부 장려를 위해 지정기부금단체에 어린이집 추가

- 보편적 아동수당*과 자녀 지원세제 최대한 중복 적용
 - * '18년부터 0~5세에 대해 아동수당 월 10만원(연 120만원) 지급 ("국정운영 5개년 계획"(국정위,17.7.19.)) → 아동수당 관련 법률 제정과 연계
 - 기본공제(150만원)는 필요경비 성격, 자녀장려금*(CTC)은 저소득층 지원, 출산·입양세액공제**는 출산지원인 점을 감안하여 중복 지원
 - * 총급여 4천만원 이하 가구에 대해서 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
 - ** 출산·입양시 첫째 30만원, 둘째 50만원, 셋째이상 70만원 추가공제
 - 자녀세액공제(자녀 1인당 15만원 & 6세 이하 둘째자녀 추가공제 15만원)의 경우 아동수당과 중복지원임을 감안하여 중복 배제
 - 다만, 아동수당 도입 초기임을 감안하여 "자녀 1인당 15 만원 세액공제"는 향후 3년간 계속 중복 지원
- 육아비용 경감 등을 위해 **영유아용** 기저귀·분유에 대한 부가 가치세 면제를 '20.12.31.까지 연장

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 제도 개선

- ISA 가입자의 편의를 위해 자유로운 중도인출을 허용*하여 납입원금 범위 내 중도인출시에도 세금혜택 유지
 - * 현재는 퇴직 · 폐업 등의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
- ISA를 통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*
 - * (현행) 서민형 250만원(일반형 · 농어민 200만원) (개정) 서민형 · 농어민 500만원(일반형 300만원)

□ 전통시장, 도서·공연 지출에 대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* 확대

- * 총급여액의 25%를 초과하여 사용한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 허용
- 전통시장 소비촉진 등을 위해 전통시장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 공제율을 한시적('17~'18년 지출분)으로 인상(30% → 40%)
-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도서구입비·공연비 지출에 대해 공제율을 상향조정(15 → 30%)하고, 추가 한도 100만원 인정 ('18.7.1. 지출분부터 적용)

(3) 자영업 · 농어촌 세제지원 확대

□ 음식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* 확대

- * 개인음식점 사업자가 면세되는 농수산물 구매시 구매금액의 8/108을 매입 세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에서 공제
- 연 매출 4억원 이하 개인음식점 사업자의 공제율을 9/109로 2년간 상향 조정

□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* 확대

- * 중고차 매매업자가 개인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매입하는 경우 취득가액의 9/109를 부가가치세에서 공제(적용기한 '18.12.31.)
- 중고차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10/110으로 상향 조정

□ 의료비·교육비 세액공제를 받는 성실사업자의 범위 확대

- 의료비 등의 부담 경감을 위해 세액공제 대상 성실사업자의 요건 완화*
 - * 장부기장 의무(복식부기 → 간편장부), 수입금액 요건(3년 평균액의 90% 초과 → 50% 초과) 등

□ 소기업·소상공인 공제부금* 중도해지시 세욜 인하

- * 노란우산공제: 공제부금 불입시 소득공제 → 만기수령시 퇴직소득 저율과세· 중도해지시 기타소득(20%)으로 과세
- 소기업·소상공인이 공제부금을 중도에 임의해지시 적용되는
 기타소득세율 인하(20% → 15%)

□ 상생결제 지급금액 세액공제* 대상 확대

- * 중소기업이 상생결제제도(대기업의 신용도를 이용하여 협력기업도 동일한 할인율 적용)를 통해 중소기업에 지급한 구매대금의 $0.1\%\sim0.2\%$ 세액공제
- 2~3차 이하 협력기업의 결제지원을 위해 **상생결제 금액 세액 공제** 적용대상을 **중견기업**까지 확대 ※ 일몰 3년 연장

□ 소규모주류제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소규모맥주의 **소매점 유통*을 허용**하고 세제지원 대상 소규모 맥주제조자의 **시설기준 완화 및 주세 경감률 확대****
 - * 현재는 제조장, 영업장 등에서 최종소비자 등에 대한 판매만 가능
 - ** 저장조의 시설기준: (현행) 5kl ~75kl → (개정) 5kl ~120kl 출고량별 경감률: (현행) 100kl 이하(60%), 100~300kl(40%), 300kl 초과(20%) (개정) 200kl 이하(60%), 200~500kl(40%), 500kl 초과(20%)
- 소규모 탁·약·청주제조자의 **주세 경감률 확대***
 - * 출고량별 경감률: (현행) 20% \rightarrow (개정) 출고량 $5^{k\ell}$ 이하 40%, 초과 20%
- 주류의 첨가재료 중 산분, 향료의 범위를 「**식품위생법」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산분, 향료로 확대***하여 다양한 주류개발 지원
 - * 현재는 산분, 향료 중 젖산, 호박산, 식초산, 퓨젤유, 에스테르류 등만 가능

□ 농어촌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

- 영어자녀가 증여받은 어선,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해 증여세 감면 (5년간 1억원 한도), 8년간 자영한 어업용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
-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 **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**(1년 1억원, 5년간 2억원 한도) **요건 중 면적 제한**(1,650㎡) **폐지** ※ 일몰 3년 연장
- **농협, 수협 등의 조합원**이 융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**금전** 소비대차증서의 인지세 면제한도 상향(5천만원 → 1억원)

3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

- ◇ '저성장 고착화, 분배-성장의 선순환 약화' 등 구조적·복합적 위기상황 속에서 사회안전망의 미비로 양극화도 심화
 - ⇒ 저성장·양극화 극복을 위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세입기반 확충 지속 추진
 -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세부담 적정화
 - * 확보 재원으로 취약계층 · 영세기업 등 지원 → 사회통합 · 상생협력에도 기여
 -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워투명성을 제고하고 조세제도 합리화

(1) 세입기반 확충

□ 법인세 최고 과표구간 신설(세욜 환원)

- 법인세 과표 2천억원 초과 구간 : 22% → 25%
 - * (대상기업 수) '16년 신고기준 129개

과표구간	현행 세율	개정안
2억원 이하	10%	(좌 동)
2억원~200억원	20%	(좌 동)
200억원~2,000억원	22%	(좌 동)
2,000억원 초과	ZZ /0	25%

- * 법인세율 국제비교
 - OEOD 국가 중 국민소득 2만불·인구 2천만명 이상 10개국: 24.6%(지방세 포함 29.1%)
 - OECD 국가 중 G20 국가 11개국: 24.7%(지방세 포함 28.7%)
 - G20 국가 20개국: 25.7%(지방세 포함 28.3%)

□ 대기업 R&D비용 세액공제(당기분) 축소

○ 대기업의 일반R&D 증가분 세액공제(30%)는 현행 유지하되,
 당기분은 축소(R&D지출액의 1~3% → 0~2%)

구분	현	행	개정 당기분 증가분	
一七	당기분	증가분		
중소기업	25%	50%	(현행과 동일)	
중견기업	8~15%	40%		
대기업	1~3%*	30%	0~2%*	(현행과 동일)

* (현행) R&D지출액의 1% + 최대2%(매출액 대비 R&D 지출액 비중 × 1/2) (개정) R&D지출액의 0% + 최대2%(매출액 대비 R&D 지출액 비중 x 1/2)

□ 설비 투자세액공제 축소

○ 여타 투자세액 공제제도와의 형평 등을 감안하여 생산성향상시설, 안전설비,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축소 ※ 일몰 2년 연장

* (생산성향상시설) 대・중견・중소 3・5・7% → 1・3・7% (안전설비) 대・중견・중소 3・5・7% → 1・3・7% (환경보전시설) 대・중견・중소 3・5・10% → 1・3・10%

□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조정

- 과세형평 제고, 국제추세 등을 감안하여 **이월결손금 공제한도** (중소기업 제외)를 **점진적으로 조정**
 - 공제한도: 당해연도 소득의 80% → ('18년) 60% → ('19년) 50%

□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익 과세전환

○ 복식부기 개인사업자의 사업 관련 유형자산 처분손의 과세대상을 업무용승용차에서 기계장치 등 모든 유형자산으로 확대

□ 금융소특 과세특례 정비

- 고배당기업 주주에 대한 **배당소득증대세제*** **일몰종료**
 - * 고배당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세제지원(9% 원천징수, 종합과세자 5% 세액공제)
- 장기채권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* 폐지
 - * 만기 10년 이상 채권을 3년 이상 보유시 이자소득에 대해 30% 분리과세
- 해외주식펀드 수익에 대한 비과세* 일몰종료
 - * 해외주식펀드 투자(3천만원 한도)에 대한 주식 매매ㆍ평가이익 및 환차익 비과세
- 하이일드펀드 수익에 대한 분리과세* 일몰종료
 - * BBB+ 이하 비우량 채권 등을 편입한 펀드 투자(3천만원 한도)에 대해 14% 분리과세

□ 양도소득세 감면 합리화

- 양도소득세의 과도한 감면 방지, 감면제도 간 형평 등을 위해 **양도소득세 감면한도***를 **일원화**
 - * (현행) 5년간 2억원 : 공익시업용 토지 중 현금보상 등 (개정) 5년간 2억원 5년간 3억원 : 공익시업용 토지 중 장기채권보상, 8년 지경농지 등 (개정) 5년간 2억원
- 여타 감면수준 등을 고려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협의매수·수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하향조정*
 - ※ 일몰 3년 연장
 - * (현행) 25%(지정일 이전 취득 토지는 40%) → (개정) 20%(30%)

□ 정책목적을 달성했거나 실효성 없는 제도의 축소

- 전자신고가 정착단계(신고율 90~99%)에 있는 점을 감안하여 전자 신고세액공제^{*} 한도 축소^{**}
 - * 전자신고시 납세자 또는 세무대리인에게 건당 소득세·법인세 2만원, 부가가치세 1만원 세액공제
 - ** (현행) 세무대리인 400만원(법인 1,000만원) → (개정) 200만원(500만원)
-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^{*} 일몰종료
 - * 토지·건물을 현물출자시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

□ 부가가치세 비과세·면세 축소

- **정부업무대행단체**의 부가가치세 면세사업 중 공익성이 낮고 민간과의 경합성이 높은 사업을 과세 전환^{*}
 - * 보관업, 보호예수, 설계 감리용역, 조경사업 등
- **군인 등의 군 골프장 및 숙박시설* 이용**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 전환
 - * 국군복지단 등이 운영하는 호텔. 콘도 등

참 고 17년 일몰이 도래한 조세지출 정비 재설계 연장 현황

◆ 심층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비과세 감면 제도 정비 재설계

* 일몰도래 50개 항목 중 **일몰종료 5개**, 재설계 19개(**축소 6개**, 조정 13개), 일몰연장 26개 [총 11개 정비 → **정비율 22%**]

구	분	제도 개요 및 재설계 내용	사유
		• 고배당기업 주식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	과세형평 제고
ī		•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에 대한 과세특례	정책목적 달성
5	<u>-</u>	•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과세특례	과세형평 제고
2	5	• 기업 간 주식 등의 교환에 대한 과세특례	실효성 미미
7	ī.	• 임대주택 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 과세특례	실효성 미미
		•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→ 한도 1억원 설정	중소기업 지원세제를 고용친화적으로 개편
		 생산성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→ 공제율 축소(대 3, 중견 5% → 대 1, 중견 3%) 	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
	축	• 안전설비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→ 공제율 축소(대 3, 중견 5% → 대 1, 중견 3%)	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
	소	•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추가 특례 → 소규모법인 적용한도 축소	부동산입대업 등 특성 감안
		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등에 대한 양도세 감면 → 감면율 하향 조정(25%, 40% → 20%, 30%) 	다른 제도와의 형평성 감안
		•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→ 농어업용 일몰 연장, 발전 ·산업용 과세전환	과세형평 제고
		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→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 	창업·벤처투자 활성화 지원
		・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→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·재설계	일자리 창출 지원
		 * 청년고용증대세제 →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통합·재설계 	일자리 창출 지원
재설		 ·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중소기업 세액공제 → 중견기업으로 확대, 공제율 인상 	여성의 출산 육아 지원
계		 ・특성화고등학교 등 졸업자를 병역 이행 후 복직 시킨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→ 중견기업으로 확대, 공제율 인상 	병역 이행 후 고용 안정 지원
	조 정	•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→ 중소기업 공제율 인상	임금 인상에 따른 중소 기업의 부담 완화
	· 확	・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세액공제→ 중소기업 공제액 인상	정규직 전환 유도
	대	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→ 중견기업으로 확대	협력기업의 결제 지원
		• 법인 본사의 수도권 밖으로 이전시 법인세 등 감면 → 이전인원이 많을수록 지원 확대	지방이전 지원 확대
		•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→ 면적제한 폐지	축산농가 지원
		•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→ 어선 ·어업용토지 등도 감면대상 포함	농어민 지원
		• 신재생에너지 생산용기자재에 대한 관세 경감 → 중견기업으로 확대	친환경 세제지원
		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→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추가 	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 감안

구분	제도 및 연장기간	연장 사유		
	• 창업투자회사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(3년)	창업·벤처투자		
	• 창업자 등에의 출자 과세특례 (3년)	활성화 지원		
	•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배제 특례 (3년)	중소기업 지원		
	• 창투사 등의 벤처기업 등 주식 거래시 증권거래세 면제 (3년)	0 / 16 16		
	•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감면 (3년)			
	•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시 양도차익 법인세 과세이연 (3년)	지방이전 지원		
	• 수도권과밀억제권 밖 이전 중소기업 소득세·법인세 감면 (3년)	10 12 12		
	• 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양도차익 과세이연 (3년)			
	• 농업·축산업·임업·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(3년)			
	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(3년)	농어민 지워		
	·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(3년)	중어민 지원 		
일	• 농 어민이 작수입하는 농 축산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		
몰	•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100% 세액감면 (3년)			
연	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		
장	• 농어촌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(3년)	민생 안정		
	•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		
	• 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		
	• 전기자동차 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% 감면 (2년)			
	• 환경오염방지 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(2년)			
	•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친환경 세제지원		
	• 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(3년)			
	•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사후환급 (2년)	관광·문화 지원		
	•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(3년)	고유목적사업 지원		
	• 농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 (3년)	고비크'크'시티 시편		
	•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에 대한 과세특례 (2년)	금거래 활성화		
	•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(3년)	주거 정비사업 지원		

(2) 세원투명성 강화

□ 성실신고확인제도* 적용대상 확대

- * 종합소득세 신고시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 (위반시 가산세 5%)
- 가공경비 계상 등 불성실 신고에 대한 검증 강화를 위해 성실
 신고 확인대상 개인사업자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

<성실신고 확인대상 수입금액 기준 조정>

구분		농업, 도소매업 등	제조업, 건설업 등	개인서비스업 등
	현행	20억원 이상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
개	′18∼′19년	15억원 이상	7.5억원 이상	5억원 이상
정	′20년 이후	10억원 이상	5억원 이상	3.5억원 이상

- 소규모법인 등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성실신고 확인 대상에 일정요건*에 해당하는 법인(외감법인 제외)을 추가
 - *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인 개인사업자가 법인 전환 후 3년 이내인 법인, 부동산임대·이자·배당 소득이 주업인 법인(지배주주 지분 50% 초과)
- 성실신고 확인에 따른 **납세협력비용 경감**을 위해 **성실신고** 확인비용세액공제(60%) 한도를 상향 조정(100만원 → 120만원)
- \circ 성실신고 확인대상자가 확인을 받지 않은 경우 $^{\oplus}$ 무신고 \cdot $^{\otimes}$ 무기장 가산세 부과시에도 $^{\otimes}$ 성실신고확인서 미제출 가산세(5%) 적용 *
 - * (현행) Max{①, ②, ③} → (개정) Max{①, ②} + ③

□ 현금영수중 의무발급* 대상업종 확대

- *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어도 의무발급(미발급시 50% 과태료)
- 사업자의 세원투명성 강화를 위해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
 3개 업종* 추가(현행 58개 → 61개 업종)
 - * 악기 소매업, 자전거 소매업 및 기타 운송장비 소매업, 골프연습장 운영업 추가

□ 주택임대사업자 등록* 유도

- * 의무임대기간(4년 이상, 준공공임대는 8년), 임대료 인상 제한(연 5%)
-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유도를 위해 소형 주택임대등록 사업자에 대한 소득·법인세 감면 요건* 완화(3호 이상 임대→ 1호 이상 임대)
 - * 국민주택규모,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 3호 이상을 주택임대사업자등록 후 4년 이상 임대시 소득·법인세 30% 감면(준공공임대는 8년 이상 임대시 75%)

□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

- 개인사업자의 **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대상 확대***
 - * (현행) 과세공급가액 3억원 이상 (개정) 과세공급가액과 면세수입금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
- 전자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을 **전자세금계산서와 동일**하게 수입 금액 **10억원 이상** → **3억원 이상** 개인사업자로 확대 (~19년 시행)

□ 가공세금계산서 가산세욜 인상

- 가공세금계산서 수취·발급에 대한 가산세율 인상(2% → 3%)
- 공급가액을 부풀린 "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"를 발급한 경우 가공 금액에 대해 가산세율 인상(1% → 2%)

□ 신용카드사에 의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도 도입

- 체납이 많은 유흥주점업 등을 대상으로 신용카드 결제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용카드사가 대리납부(*19년 시행)
 - 신용카드사는 결제금액의 4/110*를 대리납부
 - * 유흥주점 등 업종의 부가가치율[(매출액-매입액)÷매출액]이 약 27~56% 임을 감안하여, 사업자가 실제 부담하는 부가가치세율 수준으로 원천징수
 -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대리납부된 금액의 일정비율* 세액공제
 - * 시행령에서 규정(예: 1% 내외)

□ 역외세원 관리 강화

- 역외금융정보 수집을 위해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인하
 (10억원 초과 → 5억원 초과)
- 펀드를 통해 해외투자하고 받은 이자·배당 등에 대한 외국 납부세액 환급한도 축소(14%→10%)
 - *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 이자·배당소득 원천징수를 10%로 하고 있는 점을 감안
-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*의 전부 또는 일부를 **미제출・거짓** 제출시 과태료 인상(보고서별 1천만원 → 3천만원)
 - * 개별기업 보고서, 통합기업 보고서, 국가별 보고서

□ 다국적기업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- 혼성금융상품*에 대한 지급이자는 이를 지급받은 국외특수 관계인 소재지국에서 1년 내에 과세되는 경우**에만 비용 인정
 - * 부채·자본 성격을 동시에 가진 금융상품(예: 이익참가부 사채)으로 이자 지급국에서는 부채(이자비용 공제)로 보나 상대국에서는 자본(배당 비과세)으로 취급 → 양 국가에서 이중 비과세
 - ** 이자비용으로 공제받으려는 내국법인이 상대국에서 과세된 사실을 입증
 - 다국적 기업의 **국외특수관계인**으로부터의 **과다 차입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**를 위하여 **이자비용 공제제한 제도 도입(**′19년 시행)
 - 내국법인*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순이자비용이 조정 소득금액**의 30% 초과시 초과이자비용에 대해 비용 불인정
 - * 금융·보험업은 적용 제외
 - ** 순이자비용, 감가상각비 차감전 세무상 이익

□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특에 대한 과세 강화

- 비거주자·외국법인의 국내 상장주식 장내거래에 대한 소득세·법인세 과세대상 대주주 범위 확대(지분 25% 이상 → 5% 이상)
 - * 조세조약상 과세대상 제한이 없거나 과세대상 주식비율이 5%이상인 경우(인도 등 10개국) 및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과세 가능
- 고소득 외국인 파견근로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용역대가
 지급시 원천징수하는 대상업종 확대^{*} 및 원천징수 세율 인상(17% → 19%)
 - * (현행) 항공운송, 건설, 전문·과학 및 기술서비스 (개정) 선박건조업, 금융업 추가

□ 관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

- 신용카드를 이용한 **해외물품 구매·현금 인출** 내역 관세청 통보대상 확대(분기별 합계 5천불이상 → 실시간 건당 600불 이상)
- 중고차 밀수출 관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* 의무 위반시 과태료(500만원 이하) 부과
 - * 개장검사가 어려운 컨테이너에 적재한 수출 중고차에 한정하여 운영 중
- 체납 징수 제고를 위해 관세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대상 확대(체납액 3억원 이상 → 2억원 이상)
- 관세체납 방지를 위해 납세의무자인 화주 이외 관세 포탈 등 범칙행위자*(수입명의인 등)에 대하여도 연대납세의무 부과
 - * 교사·방조범 등을 포함하며, 범칙행위를 통한 이익을 취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

(3) 조세제도 합리화

□ 공익법인 및 기부금단체 제도 개선

- 상출기업집단과 특수관계가 없는 **자선·장학·사회복지 목적의** 성실공익법인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조건(정관에 규정)으로 주식을 출연받는 경우 **주식보유 한도를 상향조정**(10%→20%)
- 세제지원^{*}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상속증여세법상 공익법인과 법인세법상 법정·지정기부금단체 범위 일치('19년 시행)
 - *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법인(손금산입), 기부받는 공익법인(증여세 비과세)
- 기부금단체간 형평 및 사후관리의 실효성 제고
 - 공공기관 등은 법정기부금단체에서 지정기부금단체로 변경*
 - * 정부출연금으로 운영되고 공익성이 현저히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감안
 - 현재 별도 심사 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되는 학술·장학·문화 예술·환경단체 등도 지정심사를 거쳐 지정 고시*하되, 기존 학술·장학·문화예술·환경단체 등은 3년간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
 - * 일정 요건을 충족하고 주무관청 추천을 받아 기재부장관이 지정고시(약 7천개)

□ 거주자 판정기준 합리화

- 외국인 및 재외동포의 **국내투자 촉진, 국제추세 등을 감안**하여 거**주자 판정기준 합리화***
 - * (현행) 2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 \rightarrow (개정)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 거주

□ 파생상품 과세체계 개선

- 자본소득 과세정상화를 위해 **파생상품 양도소득세율 인상(5%→10%)**
- 국내·외 파생상품에서 발생한 손익을 통산*
 - * 국내·외 파생상품 손익을 구분하여 계산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과세되는 문제 해결

□ 기타소득 필요경비율 조정

- 소득간 과세형평 제고를 위해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율(80%)을 유사한 사업소득의 단순경비율 수준(60%)으로 단계적 조정*
 - * 원고료, 강연료, 자문료, 특허권 양도 등: (현행) 80% - ('18년) 70% - ('19년부터) 60%

□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* 제도 합리화

- * 물가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증가(결집효과) 완화를 위해 3년 이상 보유시 적용
- **물가안정 추세** 등을 감안하여 **장기보유 특별공제율·기간조정**(19년 시행)
 - 연 3%, 10년 보유시 30% 공제 → 연 2%, 15년 보유시 30% 공제

□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* 보완

- * 농·수협 등 8개 조합법인에 대해 기업회계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, 접대비 등 일부 세무조정 후 저세율로 법인세 과세
- 대규모 조합법인(매출액 100억원 초과)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세무조정

□ 발전용 유연탄 개별소비세욜 조정

- 환경에 미치는 영향, 발전용 연료간 형평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*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개별소비세율 조정
 - * 발전용 유연탄: 30원/kg(개별소비세 30원) 발전용 LNG: 90.8원/kg(개별소비세 60원, 수입부과금 24.2원, 관세 6.6원)
 -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**발열량 차이**,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발전용 유연탄의 개별소비세율을 kg당 6원 인상

구 분	현 행	개 정
저열량탄(5,000kal/kg 미만)	27원/kg(탄력)	33원/ kg(탄력)
중열량탄(5,000kcal/kg 이상, 5,500kcal/kg 미만)	30원/kg(기본)	36원/ kg(기본)
고열량탄(5,500kal/kg 이상)	33원/kg(탄력)	39원 / kg(탄력)

(4) 납세자 권익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

□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

- 납세자의 세무조사 준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무조사의
 사전통지* 기한 연장 (10일 → 15일)
 - * 조사범위,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통지
- 납세자가 **위법·부당한 세무조사의 중지** 등^{*}을 납세자보호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**세무조사 착수시점에 고지**하도록 의무화
 - * 조사공무원의 위법·부당한 행위의 시정, 조사기간 연장과 조사범위 확대에 따른 세무조사의 중지·일시중지 등
- 세무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**세무조사와 직접 관련 없는** 자료* 제출 요구의 금지 명문화
 - * 조사대상 세목·과세기간의 과세표준·세액의 계산과 관련된 자료 외의 자료
- 납세자 동의를 전제로 한 **장부·서류** 등의 **일시보관**이 **남용**되지 않도록 **일시보관 요건*** 및 **반환의무**** 강화
 - * 무신고, 무자료·위장·가공거래, 탈루혐의 등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이 배제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납세자가 임의로 제출한 장부 등에 한해 허용
 - ** (현행) 납세자 요청시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즉시 반환 → (개정) 현행요건 + **반드시 14일 이내에 반환**하되. 납세자보호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연장 가능
- 세무조사 종료시 조사내용, 과세이유, 과세표준·세액 및 산출근거 등 조사 결과를 납세자에게 구체적으로 설명·통지하도록 의무화
- 관세조사시 **납세자권리헌장이 교부되고 변호사·관세사 조력을** 받을 수 있는 **범칙사건의 범위 확대***
 - * (현행) 관세포탈, 부정감면, 부정환급 범칙사건 → (개정) **모든 범칙사건**

□ 납세자보호위원회*의 납세자 권익보호 기능 강화

- * 납세자 권익보호 관련 사항(세무조사 기간연장, 세무조사 범위확대, 세무조사시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등) 심의를 위해 세무서·지방청에 설치·운영
- 국세청(본청)에 납세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여 세무서·지방청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납세자의 재심 기회 부여
 -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납세자보호관 외 8인은 기재부장관 등이 추천하는 민간위원으로 구성
- 세무서·지방청에 설치·운영중인 납세자보호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민간위원 확대*
 - * (현행) 민간위원 1/2이상 → (개정) 납세자보호담당관외 전부 민간위원으로 구성
-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결과의 **법적구속력 강화**를 위해 세무 공무원의 **심의결과 이행 의무화**
-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납세자의 의견진술권 부여

□ 국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확대

- 과세전적부심사·이의신청·국세청 심사청구의 중립성 강화를 위해 심의기구인 **국세심사위원회**의 **민간위원 확대***
 - * (현행) 민간위원 1/2이상 → (개정) 민간위원 2/3이상

□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간의 사전조정제도 개선

-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간의 **사전조정 대상 확대***
 - * (현행) 국세 정상가격과 관세 과세가격 산출방법이 유사한 경우로 한정 (개정) 산출방법이 유사하지 않은 거래도 추가
- 관세청과 국세청간 실무조정위원회 설치·운영

□ 관세 환급대상 수출용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

○ 수출업체가 관세를 과다환급 받아 사후에 추징될 수 있는 위험을 사전방지하기 위하여 원재료 소요량 사전심사 청구제도 도입

Ⅲ.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

(1) 세수효과 : 연간 +5.5조원

- □ 금년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효과는 연간 +5.5조원
 - (증가 요인) 법인세율·소득세율 조정, 발전용 유연탄 세율 조정, 주식 양도소득세율 조정, 투자세액공제 축소 등
 - (감소 요인) 고용증대세제 신설, 근로·자녀장려금 지급 확대,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, 중소기업 지원체계 개편 등

< 연도별 세수효과(전년대비 기준) >

(단위: 억원)

	계	'18년	'19년	'20년	'21년	'22년이후
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—	54,651	9,223	51,662	△ 4, 556	△2,892	1,214
소득세	21,938	6,133	14,508	714	△631	1,214
법인세	25,599	△341	33,773	△5,572	△2,261	_
부가가치세		△493	72	52	-	_
기타	7,483	3,924	3,309	250	-	_

(2) 세부담 귀착

(단위: 억원)

서민·중산충 ¹ ,/중소기업	고소득자/대기업 ^{2」}	기타 ^{3」}	계
△8,167	62,683	135	54,651

- 1」OECD의 서민·중산층 기준(중위소득의 150% 이하자: 총급여 6,300만원 이하)
- 2.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 조정 효과 포함
- 3」외국인・비거주자・공익법인,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

IV. 세법개정 추진일정

□ 9.1(금), 정기국회 제출

(1) 개정대상법률 : 총 13개
□ 내국세(10개)
 국세기본법, 조세특례제한법, 소득세법, 법인세법, 상속세 및 증여세법, 부가가치세법, 개별소비세법,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, 증권거래세법, 주세법
□ 관세(3개)
 관세법,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, 관세사법
(2) 추진일정
□ 8.2(수), 세법개정안 발표
□ 8.3(목)~8.22(화)(20일간), 입법예고
□ 8월 말, 차관・국무회의 상정